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

□ 안내사항

○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**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**

○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**'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' 한정적으로 적용**

□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

○ **(부정청탁)**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**공무(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)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**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

○ **(금품 수수)**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**'공무 수행과 관련하여'** 수수하는 경우에만 **위반행위에 해당**

※ 다만,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(법 제8조제3항 각 호)

<예 시>

◆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

•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: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

• 금품 수수

-**심의회 안건 관련자**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**공무와 관련 있는** 금품 수수에 해당

-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**공무원**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**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**

□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(제10조) 적용 제외

○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**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(법 제10조)은 적용 제외**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

Ⅰ. 개요

< 공무수행사인(법 제11조제1항 >

제11조(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공무수행사인"이라 한다)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

1.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2.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3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4.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○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(제5조부터 제9조까지) 규정을 준용

Ⅱ. 공무수행사인의 유형

1.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○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- 위원회는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**공공기관에 설치되어**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**합의제 기관**

※ 예시

◆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,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등

◆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,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,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

◆「방송법」에 따른 시청자위원회, 「신문법」에 따른 편집위원회, 「신문법」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

○ 위원회는 **'법령에 따라 설치된'** 위원회에 한정되고, 법령에는 **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(조례·규칙 포함)**뿐만 아니라 **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·훈령·지침 등도 포함**

※ 예시) 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평가심의위원회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 및 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(환경부고시) 제4조에 따른 환경부예규 제3장에 따라 설치)

2.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○ 법령에 따라 **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**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- **'법령에 따라'**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·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

※ (예시) 공인회계사 등록·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,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,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,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개설·변경·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

○ 권한을 위임·위탁 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·단체뿐만 아니라 **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**

3.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

○ 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**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**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

○ 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**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**

4. 심의 ·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· 단체

○ 법령에 따라 **공무상 심의·평가 등**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○ 심의·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·결정을 내리는 감리, 기술검토, 검사, 인증 등도 포함

※ 예시

「경관법」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,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의 학교 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·인증 등

○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**심의·평가 권한을 위임·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·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**에 해당

Ⅲ.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

○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**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**(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,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,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)만 적용

-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

○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**'공무 수행에 관하여'**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

- **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**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